

# 사고발생현황

구 분		내 용
승인번호		156006
승인일자		2006년 8월 10일
통계종류		보고통계
보고대상	지역	■ 전국
	범위	■ 전국
	보고단위	■ 우리나라 지역에 한해 동안 발생한 사고발생 현황
	보고대상 규모	■ 우리나라 지역에 1월 1일~12월 31일 기간동안 발생한 사고 현황
보고항목		■ 교통, 화재, 산불, 철도, 폭발 등 총26개의 유형 사고의 재난발생 횟수, 인명피해 등
자료보고방법 및 작성방법		■ 행정집계
보고기간	기준시점	■ 매년 12월 31일 기준
	보고시기	■ 작성기준년도 익년 1월~9월
	보고주기	■ 1년
공표	공표시기	■ 작성기준년도 익년 12월
	공표주기	■ 1년
	공표방법	■ 간행물(재난연감), 국민재난안전포털(www.safekorea.go.kr)
보고체계		■ 시군구→시도→행정안전부, 유관기관 행정자료 제출
자료이용시 유의사항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「재난연감」의 통계자료는 재난관리 주관기관에서 관리하는 중점관리 대상 26개 유형의 사회재난 통계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사고통계자료를 정리·편집한 것임</li> <li>■ 통계표 중 과거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숫자 등은 당해 연보에서 정정한 것임</li> </ul>
주요 용어해설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사회재난: 화재·붕괴·폭발·교통사고(항공사고 및 해상사고 포함) 화생방사고·환경오염 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·통신·교통·금융·의료·수도 등 국가기반시설의 마비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또는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,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(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조)</li> <li>■ 재난관리책임기관: 중앙행정기관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 포함) 및 지방자치단체, 지방행정기관·공공기관·공공단체(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)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</li> </ul>
주요 연혁		■ (2006년) 사고발생현황 통계 작성 승인(통계청)